

보도자료

2015. 12. 9.



대 법 원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

양형위원회

담당자

운영지원단장 안종열 (☎ 3480-1924)

공보관실 ☎ 3480-1451

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

- 양형위원회는 2015. 12. 9. 16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『근로기준법위반, 석유사업법위반,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』을 의결 ⇒ 향후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6. 3.경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

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- 최근 염전 근로자, 향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'강제근로·중간착취' 유형,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'임금 등 미지급' 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
- ◆ 강제근로·중간착취
 - ① 강제근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,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◆ 임금 등 미지급
 -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5,000만 원 미만, 5,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, 1억 원 이상의 3개 소유형으로 분류 :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
 - 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미지급, ②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, ④ 피지휘자에 대한

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-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②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-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, 석유제품의 용량·용도위반 판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 마련
- ◆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 유형
 - 제조·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중소규모, 일반규모, 대규모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: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 처벌
 - ①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②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,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,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◆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
 - ①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②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,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,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③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- 최근 여러 차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
-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된 양형기준 :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 가능(가중영역의 상한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 상한의 1/2 가중, 법정형 : 5년 이하의 금고)
- ① 불구,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, ② 술·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·보건조치의무 위반

의 정도가 중한 경우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- 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, ②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③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4 향후 일정

- **2015. 12. 16. ~ 2016. 1. 16.** :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희
- **2016. 2. 1.** :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
 -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, 14:00 ~ 18:10
- **2016. 3.경** :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

I.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강제근로 등 : 사용자가 폭행,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(근로기준법 제107조, 제7조, 선박법 제167조 제3호, 제25조의2),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(근로기준법 제107조, 제8조), 폭행,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, 근로자 모집·공급(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)
- 중간착취 :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(근로기준법 제109조, 제9조),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 등이 응모자로부터 금품, 이익을 취득(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, 제32호,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, 제111조)
- 임금 등 미지급 : 임금, 퇴직금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(근로기준법 제109조, 퇴직급여법 제44조, 파견법 제43조 제3호,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, 선원법 제168조 제1항, 제170조 제3호)

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1. 강제근로·중간착취

유형	감경	기본	가중
강제근로·중간착취 등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6월

2. 임금 등 미지급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5,000만 원 미만	- 6월	4월 - 8월	6월 - 1년
2	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	- 8월	6월 - 1년	8월 - 1년6월
3	1억 원 이상	6월 - 1년	8월 - 1년6월	1년2월 - 2년6월

③ 주요 특징

- 최근 염전 근로자,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'강제근로·중간착취' 유형,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'임금 등 미지급' 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
- ◆ 강제근로·중간착취
 - ① 강제근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,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 -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강제근로 등에 있어서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, ③ 중간착취에 있어서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- ◆ 임금 등 미지급
 -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5,000만 원 미만, 5,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, 1억 원 이상의 3개 소유형으로 분류 :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
 - 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미지급, ②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 -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II.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 : ① 가짜석유제품 제조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 또는 판매, ②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·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·판매·저장·운송 또는 보관(석유사업법 제44조 제

3호)

-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 :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, 정량미달 판매,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(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)

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1.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중소규모 (5만 리터 미만)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일반규모 (5만 리터 이상, 50만 리터 미만)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3	대규모 (50만 리터 이상)	8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 - 4년

2.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정량미달판매 · 부피증가 판매	- 8월	6월 - 1년	10월 - 1년6월

③ 주요 특징

-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, 석유제품의 용량·용도위반 판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
- ◆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
 - 제조·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중소규모, 일반규모, 대규모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: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 처벌
 - ①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②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,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,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- ① 강요에 의한 범행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단순 가담, ③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◆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

- ①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②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,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(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),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강요에 의한 범행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단순 가담, ③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III.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과실치사 :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(형법 제267조)
-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상 :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(형법 제268조)
-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 :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(형법 제268조)
- 산업안전보건법위반 :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또는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(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)

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과실치사	- 8월	6월 - 1년	8월 - 2년
2	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상	- 6월	4월 - 10월	8월 - 2년

3	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4	산업안전보건법위반	4월 - 10월	6월 - 1년6월	10월 - 3년6월

③ 주요 특징

- 최근 여러 차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
-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된 양형기준 :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 가능(가중영역의 상한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 상한의 1/2 가중, 법정형 : 5년 이하의 금고)
- ① 불구,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, ② 술·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·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, ②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③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